

審議를 거쳐 그 承繼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11條의 2 (決定通知) 商工部長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承繼決定을 한 때에는 그 內容을 當該機關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2條 (特許權의 登錄等) ① 機關의 長은 第11條의 2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다음과 같이 國家名義로 特許登錄을 하고 그 事實을 商工部長官 및 發明者에게 各各 通知하여야 한다.

特許權者: 나라

管理廳: 商工部長官

承繼廳: 承繼하는 機關의 長의 名稱

② 機關의 長은 國家에서 承繼하지 아니하기로 決定된 것은 이를 發明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第13條를 削除한다.

第14條 (登錄補償金の 支給) 商工部長官은 機關의 長으로부터 第12條 第1項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때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補償金を 發明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第15條 (登錄補償金) 國家에서 承繼할 것으로 決定한 特許權에 대하여는 權利 每 1件마다 10萬원의 登錄補償金を 發明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第16條 (國有特許權의 處分補償金) ① 商工部長官은 有償으로 國有特許權을 讓渡하거나 第3者에게 그 專用實施權을 設定 또는 通常實施權을 許與하거나 有償으로 國家가 直接實施할 때에는 權利 每1件에 대한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의 年間收入金を 其準으로 하여 發明者에게 다음 各號에 의한 처분 補償金を 支給하여야 한다.

1. 國有特許權의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 年間 收入金이 100萬원 以下일 때에는 그 讓渡代金이나 實施料의 30/100에 該當하는 額

2. 國有特許權의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의 年間 收入金이 100萬원을 超過 1,000萬원 以下일 때에는 다음의 方法으로 計算한 額(當該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 $100萬원 \times \frac{20}{100} + 30萬원$)

3. 國有特許權의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의 年間 收入金이 1,00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다음의 方法으로 計算한 額
(當該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 1,000만원) $\times \frac{10}{100} + 210萬원$

② 商工部長官은 無償으로 第3者에게 國有特許權의 專用實施權을 設定 또는 通常實施權을 許與하거나 無償으로 國家가 直接實施할 때에는 第1項의 各號에 準하여 算出된 金額을 處分補償金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第17條~19條를 削除한다.

第20條 (補償金の 支給處分) 第15條 또는 第16條의 補償金を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發明者가 2人以上일 境遇에는 그 持分에 따라 支給한다.

第21條 (轉職, 退職, 및 死亡後의 補償) ① 發明者가 轉職 또는 退職한 境遇에도 第15條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은 全額을 支給한다.

② 發明者가 死亡하였을 境遇에는 그가 支給받을 수 있는 補償金を 相續人에게 支給한다.

第22條 (補償金の 不返還) 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支給된 補償金은 그 特許가 無効로 된 境遇에는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特許가 某人에 의하여 無効로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3條 (委員會의 設置) 職務發明 및 國有特許權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爲하여 商工부에 職務發明審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4條 (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委員 10人 以內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商工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經濟企劃院 企劃次官補, 財務部財政次官補, 總務處企劃管理室長, 科學技術處綜合企劃室長, 特許局長, 工業振興廳 次長 및 特許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商工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가 된다.

③ 委員會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門家로 構成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④ 專門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商工部長官이 定한다.

第25條 (委員長)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掌理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特許局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6條 (委員會의 審議事項)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發明의 國家承繼에 關한 事項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自由發明의 國家承繼에 關한 事項

3. 職務發明의 獎勵에 關한 事項

4. 第1號 乃至 第3號 外에 商工部長官이 附議하는 事項

第27條 (委員會의 議事等) ① 委員長은 必要에 따라 委員會의 會議을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會議은 在籍委員(委員長을 包含한다)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替成으로 議決한다.

③ 議長은 表決의 決果 可不動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28條 (幹事) ① 委員會에 幹事와 書記 各 1人을

는다.

② 幹事는 特許局管理部長이 되고 書記는 特許局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③ 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하며 書記는 幹事を 補助한다.

第29條 (運營의 細則) 이 令에 規定한 外에 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必要한 事項은 委員長이 定한다.

第30條 (自由發明의 承繼) ① 自由發明에 對하여 發明者로부터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國家에 讓渡한다는 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 令에서 定하는 職務發明의 承繼節次에 準하여 決定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承繼한 境遇에는 第12條, 第14條 내지 第16條, 第20條 내지 第22條, 第31條 내지 第34條를 各各 準用한다.

第31條 (發明者의 義務) 發明者는 그가 한 職務發明의 處分 또는 實施에 있어서 國家 또는 實施 許與를 받은 者가 必要로 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 이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32條 (秘密保持) 發明者 또는 職務發明에 關한 業務에 從事하는 者는 그 職務發明의 內容에 對한 秘密을 지켜야 한다.

第33條 (實用新案 및 意匠에 關한 準用) ① 이 令은 實用新案 및 意匠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第1項의 境遇에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補償金은 實用新案權에 對하여는 5萬圓, 意匠權에 對하여는 3萬圓으로 한다.

第34條 (職務發明 狀況報告) 機關의 長은 職務發明에 關한 承繼與否 및 그 內容 其他 職務發明에 關한 狀況을 商工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第35條 (商工部令) 이 令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商工部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後 1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令 施行當時의 國有特許權의 處分, 管理規定 第19條의 職務發明補償審議委員會는 이 令에 의한 職務發明審議委員會로 본다.

(계 속)

— p. 30에서 계속 —

이 때에 생각지 않았던 또 한가지의 횡재거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날 무주 구천동에 산다는 사람이 왔는데 쥐를 연속적으로 잡을 수 있다면 역시 다람쥐도 많이 산채로 잡힐게 아니냐면서 「연속포서기」 한 개를 사가지고 갔읍니다. 무주 구천동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관광지며 다람쥐로도 유명한 곳 이랍니다.

그러기에 이곳 사람들은 다람쥐를 잡아서 칠팩바퀴에 넣어 서울의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부업 이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다람쥐는 질이 좋아 외국에도 대단한 인기라는데 주문하는 수 요량을 못채워 걱정이란 것입니다.

한 마리에 1천원을 훗가하는 다람쥐를 죽이지 않고 생포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특수 낚시나 빈 병을 묻어서 거기에 빠지면 잡는다는데 그 이상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란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연속포서기」로 정말 다람쥐를 많이 사로 잡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횡재라는 것입니다.

그후 결과를 알려온 바에 의하면 다람쥐가 잘

잡힌다는 내용과 함께 놀러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주 구천동엔 갔다 오신 아버지와의 외삼촌은 그곳 사람과 동업으로 다람쥐를 잡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우리는 「연속포서기」를 많이 대 주고 또 서울로 판로를 개척하여 다람쥐를 좋은 값에 팔기로 하고 그곳 사람은 다람쥐를 잡아 관리하는 일을 맡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가지 면으로 크나 큰 희망을 걸며 보다 훌륭한 「연속포서기」를 제작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운동화를 듣기게 된 동기로 인해서 우연히 이렇게도 소중한 「연속포서기」를 고안하게 된 것을 여간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운동화를 듣어 놓을 때 의 분한 마음을 복수하게 되어 통쾌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일상 생활 주변에는 하찮은 일로 인하여 궁리하고 연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상품을 고안할 일거리가 있게 마련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저는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또 다른 발명의 「아이디어」를 찾아 봐야 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